

2020. 5. 20. 10:00

제27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0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5월 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 부지 매각

- 가창면 상원리 488번지 등 3필지는 1997. 7. 14. 수질정화시설 (1998. 7. 24. 준공) 설치를 위해 취득한 재산으로, 달성광산 폐광 이후 중금속 침출수가 유출되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자연처리방식에서 물리·화학적 처리방식으로 개선을 위한 수질정화 시설을 건축하고자 매수신청이 있어,
- 관련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상부지를 수익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함.

○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 대구도시철도 2호선 개통으로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급속도로 인구가 9만명이 넘는 다사읍 지역에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실내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체육서비스 불편 및 체육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4. 관련법령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 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5. 주요골자

가.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 부지 매각

소 재 지						매각 면적 (㎡)	매 수 신청자
지 번	지목 (공부)	지적 (㎡)	용도지역	개별공시지가 (원)	대장가격(원) (공시지가×면적)		
계		4,660			185,934,000	4,660	한국광해 관리공단
가창면 상원리 488	답	1,983	자연녹지지역	39,900	79,121,700	1,983	
가창면 상원리 489	답	2,175	자연녹지지역	39,900	86,782,500	2,175	
가창면 상원리 490	답	502	자연녹지지역	39,900	20,029,800	502	

나.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 위 치 : 다사읍 달천리 132-1번지 외 3필지(다사체육공원 내)
- 기 간 : 2018. 11. ~ 2022. 5.
- 규 모 : 부지면적 7,505㎡, 건물연면적 2,350㎡, 지하 1층/ 지상 1층
 - 지하 1층 : 기계실 및 창고(220㎡)
 - 지상 1층 : 다목적 체육관, 화장실, 창고 등(2,130㎡)
- 총사업비 : 55억원(국비 10, 군비 45)
 - 설계비 2.4억원, 감리비 0.6억원, 공사비 50억, 기타 2억원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 (필지, 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 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 동)	수량	금액
취 득	계		11 (46)	81,811	74,618,168	1 (1)	2,350	5,500,000	12 (47)	84,161	80,118,168
	1.매입	토지	3 (33)	35,328	3,661,104				3 (33)	35,328	3,661,104
		건물	2 (3)	582.68	237,788				2 (3)	582.68	237,788
	2.교환	토지	1 (3)	22,332	8,907,463				1 (3)	22,332	8,907,463
		건물	1 (3)	4,294.39	1,937,813				1 (3)	4,294.39	1,937,813
	3.기타	토지									
		건물	4 (4)	19,273.75	59,874,000	1 (1)	2,350	5,500,000	5 (5)	21,623.75	65,374,000
처 분	계		1 (58)	93,876	2,693,450	1 (3)	4,660	185,934	2 (61)	98,536	2,879,384
	4.매각	토지				1 (3)	4,660	185,934	1 (3)	4,660	185,934
		건물									
	5.양여										
	6.교환	토지	1 (58)	93,876	2,693,450				1 (58)	93,876	2,693,450

2020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당 초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답	답	현풍읍	원교리	718-2	1,319	1,319	330,000,000	2020. 8.	달성군 재활용품 선별장 확장이전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도의리 289	곽병근	2019.12 의회의결
2	답	장	현풍읍	원교리	720	1,098	1,098	461,160,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71-4 무성그린맨션 101-1007	김형인	
3 (건물)	답	장	현풍읍	원교리	720	258.8	258.8	15,948,000			"	"	
4	잡	장	현풍읍	원교리	721	2,747	2,747	1,153,740,000			"	"	
5 (건물)	잡	장	현풍읍	원교리	721	240	240	3,840,000			"	"	
6	도	도	현풍읍	원교리	1749-33	2,127	450	189,000,000			건설부	국유지	
7 (건물)	대	대	화원읍	천내리	850-2 860-2	2031.75	2031.75	8,660,000,000 (사업비)	2021. 8.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상 어울림센터 신축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8	대	대	화원읍	성산리	412-1	21,835	21,835	8,380,273,000	2020. 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경찰청	국유지	2019.12. 의회의결
9 (건물)	대	대	화원읍	성산리	412-1	3,926	3,926	1,506,787,286			"		
10	대	대	다사읍	매곡리	719-19	295	295	515,070,000			"		
11 (건물)	대	대	다사읍	매곡리	719-19	242.54	242.54	423,474,840			"		
12	천	천	화원읍	명곡리	939-11	202	202	12,120,000			"		
13 (건물)	천	천	화원읍	명곡리	939-11	125.85	125.85	7,551,000			"		
14 (건물)	잡	대	유가읍	용리	31-2	13,445	5,000	19,874,000,000 (사업비)	2022. 5.	호텔 아젤리아 별관 증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15 (건물)	대	대	현풍읍	중리	506	10,737	11,680	29,500,000,000 (사업비)	2022. 6.	달성군 교육문화 복지센터 건립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6	임	임	회원읍	성산리	253	172	172	10,904,800	2020. 6.	회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달성군 회원읍 구라3길 8-8	전성배	2019.12. 의회의결
17	대	대	회원읍	성산리	257	258	258	58,462,800			"	전성배	
18	임	임	회원읍	성산리	241	76	76	1,216,000			달성군 회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19	묘	묘	회원읍	성산리	258	979	979	67,551,000			달성군 회원읍 구라3길 8-8	전성배	
20	임	임	회원읍	성산리	242	155	155	2,619,500			달성군 회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21	임	임	회원읍	성산리	259	258	258	4,850,400			달성군 회원읍 구라3길 8-8	전성배	
22	묘	묘	회원읍	성산리	264	245	245	16,905,000			"	전성배	
23	임	임	회원읍	성산리	260	198	198	3,801,600			달성군 회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24	묘	묘	회원읍	성산리	265	598	598	41,262,000			달성군 회원읍 구라3길 8-8	전성배	
25	임	임	회원읍	성산리	261	169	169	3,075,800			달성군 회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26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63	1,045	1,045	19,019,000	2020. 6.	화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달성군 화원읍 구라3길 8-8	전성배	2019.12. 의회의결
27	임	임	화원읍	성산리	산46	1,983	1,983	38,073,600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28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62	684	684	12,448,800			"	전병득	
29	대	대	화원읍	성산리	272	1,421	1,421	388,927,700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271 달성군 하빈면 묘리 692 대구 북구 산격동 981 대구 달서구 상인동 1185 대구 북구 서변동 694 대구 북구 서변동 1101 대구 북구 동변동 263 대구 수성구 봉무동 180 대구 수성구 만촌동 139 대구 수성구 만촌동 204 다사읍 문산리 269 가창면 대일리 387 가창면 우록리 549 가창면 상원리 278 다사읍 세천리 959 대구 달서구 이곡동 419 대구 북구 공산동 1007	배진호 박노균 서희규 우하충 구성서 이해춘 구경희 최진환 전병곤 하동규 윤안 서병찬 김상익 김두한 구경희 허노학 유효봉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2020. 6.	회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대구 남구 남산동 362 대구 중구 대신동 512 대구 달서구 상인동 1140 대구 남구 남산동 407 대구 북구 서변동 885 대구 북구 서변동 857 다사읍 세천리 105 다사읍 영양리 624	윤창한 신춘길 우하갑 서대교 이봉래 이민희 구인회 정영원	2019.12. 의회의결
30	임	임	회원읍	성산리	산47	5,157	5,157	94,373,100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290	전의이 씨궁구 당공파 종중	
31	전	전	회원읍	성산리	279	701	701	18,226,000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290	전의이 씨궁구 당공파 종중	
32	임	임	회원읍	성산리	산50-4	198	198	3,564,000			중구 산격동 1040	김용민	
33	임	임	회원읍	성산리	산50-3	99	99	1,782,000			중구 산격동 1040	김용민	
34	전	전	회원읍	구라리	834	506	506	35,420,000			달성군 회원읍 구라1길 77-24	백경자	
35	임	임	회원읍	구라리	산99-2	198	198	4,197,600			대구 동구 신암동 200-1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박종석 박영호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2020. 6.	회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581-28 송원맨션 3동 120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28 송원맨션 1동 90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12,704동 1306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김윙희 박재용	2019.12. 의회의결
36	전	전	회원읍	구라리	835	1,210	442	53,040,000			달성군 회원읍 구라1길 77-24	백경자	
37	전	전	회원읍	구라리	830	1,021	1,021	71,470,000			대구 달서구 송현동 1991 동서장관연립주택 108-109	임영목	
38	전	전	회원읍	구라리	829-1	403	403	22,285,900			달성군 회원읍 천내리 36-8	서숙이	
39	임	임	회원읍	구라리	산99-1	7,772	7,772	170,764,000			대구 동구 신암동 200-1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581-28 송원맨션 3동 120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28 송원맨션 1동 90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12,704동 1306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박종석 박영호 김윙희 박재용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40	임	임	회원읍	구라리	산98-2	992	992	24,601,600	2020. 6.	회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회원읍 천내리 117 보성아파트 106동 303호	서풍교	2019.12. 의회의결
41	전	전	회원읍	구라리	829	85	85	4,700,500			달성군 회원읍 천내리 36-8	서숙이	
42	임	임	회원읍	구라리	산98-1	198	198	4,910,400			달성군 회원읍 회원로2길 26	이무현	
43	임	임	회원읍	구라리	산96	3,373	3,373	70,158,400			대구 중구 서야동 29 대구 중구 서야동 29 대구 중구 서야동 29	백남길 백남옥 백남혁	
44	대	대	회원읍	천내리	851	328	328	278,373,600	2020. 2.	회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버커뮤니티 공간신축	대구 달성군 회원읍 비슬로 522길 73	한경애	2020.2. 의회의결
45 (건물)	대	대	회원읍	천내리	851	83.88	83.88	218,000,000					
46 (건물)	대	대	회원읍	천내리	851	328	562	1,840,000,000 (사업비)	2021. 10.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20년도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임	임	옥포읍	가세리	산30-13	4,186	4,186	7,241,780	2020. 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9.12. 의회의결
2	임	임	옥포읍	가세리	산30-14	598	598	1,076,400			"	"	
3	임	임	옥포읍	가세리	산31-1	8,628	8,628	15,357,840			"	"	
4	임	임	옥포읍	가세리	산31-2	496	496	882,880			"	"	
5	임	임	옥포읍	가세리	산31-3	793	793	1,467,050			"	"	
6	전	전	옥포읍	가세리	1-1	529	529	54,063,800			"	"	
7	전	전	옥포읍	가세리	1-3	954	954	86,337,000			"	"	
8	답	답	옥포읍	가세리	2-1	1,183	1,183	120,902,600			"	"	
9	전	전	옥포읍	가세리	3	1,831	1,831	165,705,500			"	"	
10	전	전	옥포읍	가세리	4-1	1,402	1,402	177,633,400			"	"	
11	전	전	옥포읍	가세리	5	1,302	1,302	117,831,000			"	"	
12	전	전	옥포읍	가세리	6	608	608	55,024,000			"	"	
13	전	전	옥포읍	가세리	7	1,220	1,220	110,410,0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4	전	전	옥포읍	가세리	8	889	889	80,454,500	2020. 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9.12. 의회의결
15	전	전	옥포읍	가세리	9-1	569	569	75,904,600			"	"	
16	전	전	옥포읍	가세리	11-1	506	506	67,500,400			"	"	
17	전	전	옥포읍	가세리	12	565	565	51,132,500			"	"	
18	전	전	옥포읍	가세리	13	1,177	1,177	93,218,400			"	"	
19	전	전	옥포읍	가세리	14	621	621	49,183,200			"	"	
20	전	전	옥포읍	가세리	15	377	377	29,858,400			"	"	
21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	3,471	3,471	20,583,030			"	"	
22	임	임	화원읍	설화리	124-7	496	496	3,035,520			"	"	
23	임	임	화원읍	설화리	124-9	298	298	777,780			"	"	
24	임	임	화원읍	설화리	124-10	1,289	1,289	3,364,290			"	"	
25	임	임	화원읍	설화리	124-15	384	384	810,240			"	"	
26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7	20,383	20,383	41,173,660			"	"	
27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8	61	61	128,710			"	"	
28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3	6,347	6,347	79,337,5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29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4	2,380	2,380	11,781,000	2020. 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9.12. 의회의결
30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5-1	8,132	8,132	16,670,600			"	"	
31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5-3	397	397	837,670			"	"	
32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5-4	793	793	1,704,950			"	"	
33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5-5	3,224	3,224	6,931,600			"	"	
34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6	595	595	3,712,800			"	"	
35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7	1,983	1,983	4,263,450			"	"	
36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8-1	1,686	1,686	10,318,320			"	"	
37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8-2	1,983	1,983	25,382,400			"	"	
38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8-2	298	298	3,814,400			"	"	
39	전	전	화원읍	설화리	838-4	161	161	28,336,000			"	"	
40	전	전	화원읍	설화리	839	1,655	1,655	202,737,500			"	"	
41	전	전	화원읍	설화리	840-1	255	255	21,471,000			"	"	
42	전	전	화원읍	설화리	840-2	836	836	55,176,000			"	"	
43	전	전	화원읍	설화리	840-3	476	476	40,079,2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44	전	전	화원읍	설화리	840-5	922	922	78,370,000	2020. 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9.12. 의회의결
45	주차장	주차장	화원읍	설화리	840-8	240	240	64,896,000			"	"	
46	전	전	화원읍	설화리	842	1,091	1,091	12,328,300			"	"	
47	전	전	화원읍	설화리	843	774	774	8,746,200			"	"	
48	임	임	화원읍	설화리	844	760	760	8,588,000			"	"	
49	전	전	화원읍	설화리	844-1	2,106	2,106	46,121,400			"	"	
50	대	대	화원읍	설화리	838-2	593	593	289,146,800			"	"	
51	대	대	화원읍	설화리	840	329	329	127,684,900			"	"	
52	대	대	화원읍	설화리	840-6	96	96	25,958,400			"	"	
53	구	구	옥포읍	가세리	1-4	11	11	995,500			"	"	
54	구	구	옥포읍	가세리	1-5	41	41	3,710,500			"	"	
55	구	구	옥포읍	가세리	4-2	116	113	10,226,500			"	"	
56	구	구	옥포읍	가세리	9-2	572	551	49,865,500			"	"	
57	구	구	화원읍	설화리	840-9	95	95	9,500,000			"	"	
58	구	구	화원읍	설화리	841-5	137	137	13,700,000			"	"	

2020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추 가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총 계			다사체육공원 내			7,505	2,350	5,500,000,000					
건물	답	답 답 전 전	다사읍	달천리	132-1 135 137-1 138	7,505	2,350	5,500,000,000 (사업비)	2022. 5.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20년도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

□ 추 가

구분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처분 대상수량 (㎡)	대장가격(원)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총 계			토지 3필지			4,660	4,660	185,934,000					
토지	답	잡	가창면	상원리	488	1,983	1,983	79,121,700	2020. 6.	한국광해 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 부지 매각	대구 달성군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토지	답	잡	가창면	상원리	489	2,175	2,175	86,782,500					
토지	답	잡	가창면	상원리	490	502	502	20,029,800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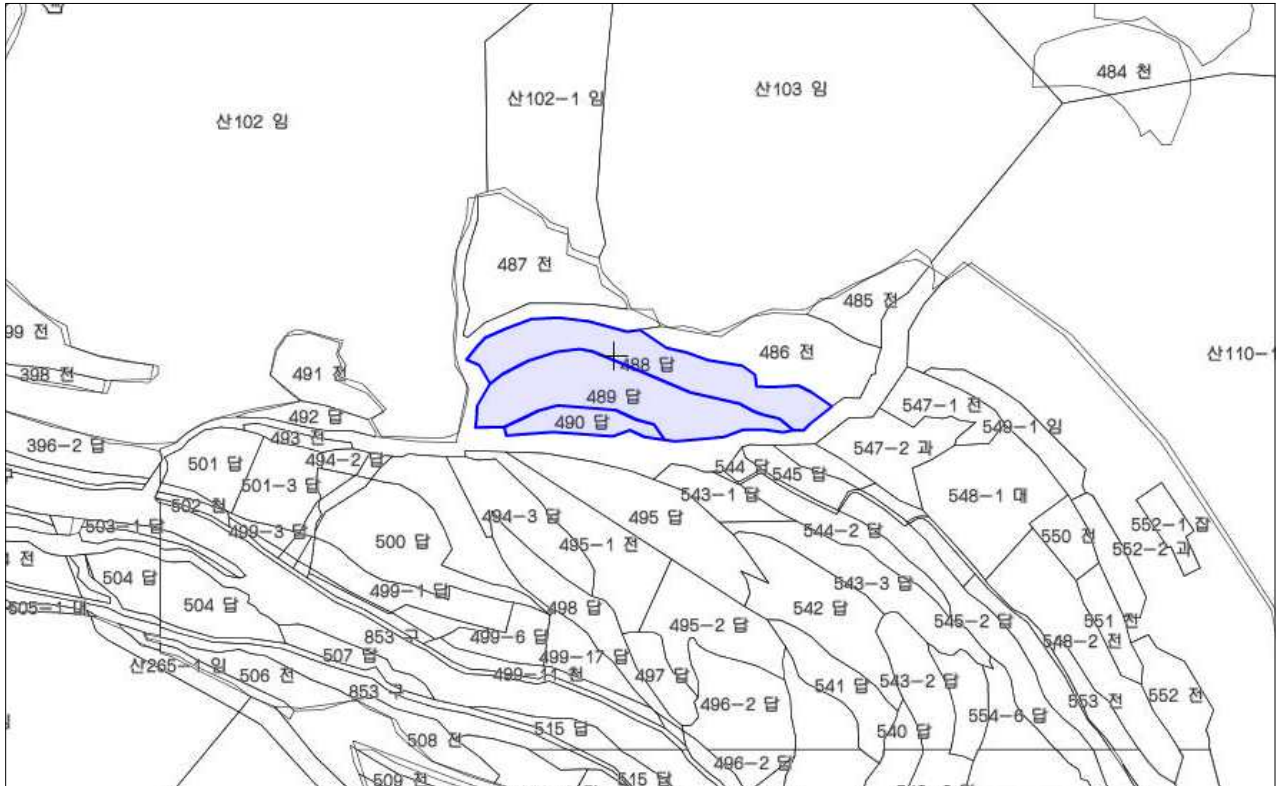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 부지 매각】

□ 위치 : 가창면 상원리 488번지 외 2필지



지적도 및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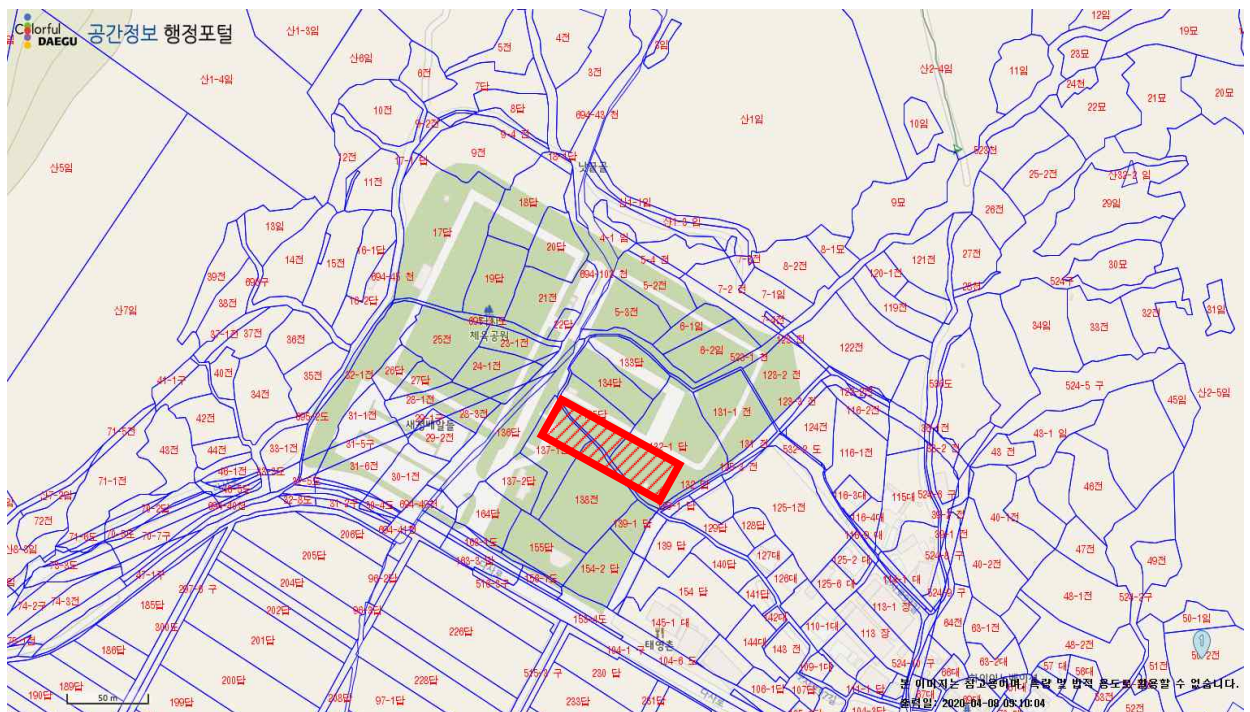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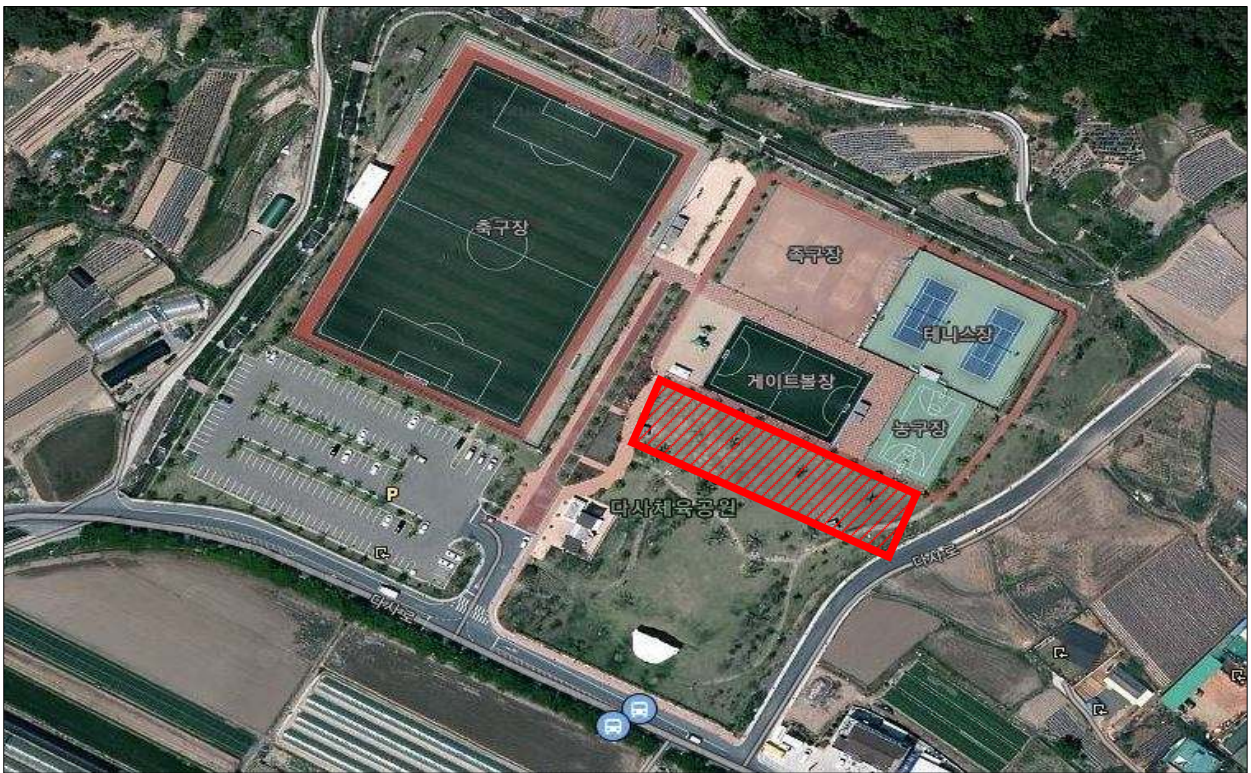
□ 위치 : 가창면 상원리 488번지 외 2필지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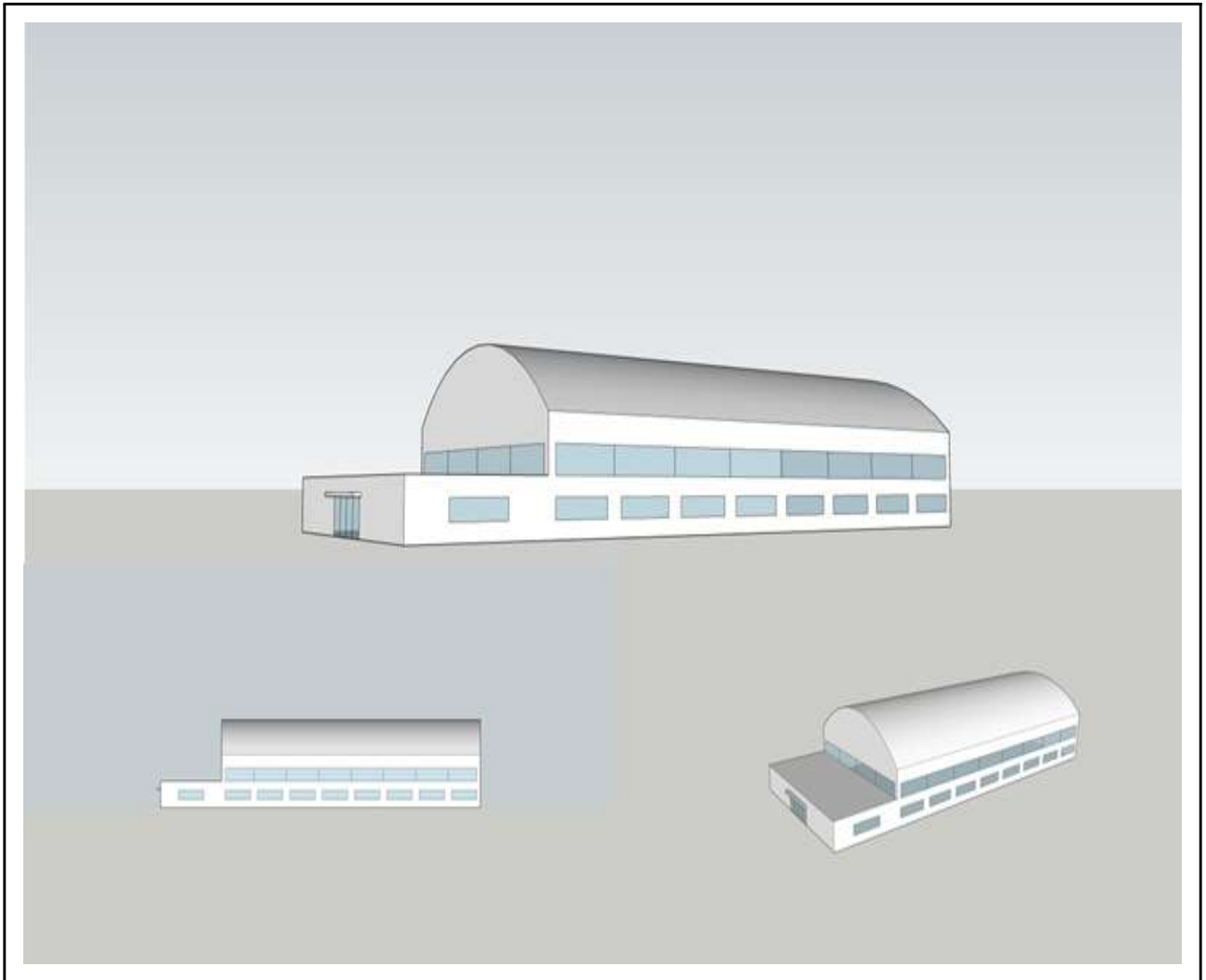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천리 132-1번지 외 3필지



조 감 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천리 132-1번지 외 3필지



II. 검토의견

2020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 부지 매각

- 가창면 상원리 488번지 등 3필지는 1997. 7. 14. 수질정화시설 (1998. 7. 24. 준공) 설치를 위해 취득한 재산으로, 달성광산 폐광 이후 계속 유출되고 있는 중금속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기존의 자연처리 방식에서 물리·화학적 처리방식으로 개선을 위한 수질정화 시설을 건축하고자 매수신청이 있어,
- 관련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상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계획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 최근,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어 인구가 9만명을 넘어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다사읍 지역에 대하여 현재 실외 스포츠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다사체육공원에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생활체육 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②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5월 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0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 200백만원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거버넌스 구축
 -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5. 출연 심의요구서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출연 대상	○ 기 관 명 : (재)달성문화재단 ○ 대 표 : 김 문 오 ○ 일반현황 :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																					
출연 사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200백만 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 기간</th><th rowspan="2">2020년 제1회 추경액</th><th colspan="5">재 원 별</th></tr> <tr> <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군비</th><th>기타</th></tr> </thead> <tbody> <tr> <td>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td><td>6월~12월</td><td>200 (기출연 3,958,619천원)</td><td></td><td></td><td></td><td>200</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20년 제1회 추경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	6월~12월	200 (기출연 3,958,619천원)				200	
구 분	사업 기간				2020년 제1회 추경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	6월~12월	200 (기출연 3,958,619천원)				200																
출연 필요성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 ○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제고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 부서 의견 (총평)	○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 ○ 문화예술 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9. 4. 19. ~ 6. 12.)

－ 2019년(2018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 A등급(91.28점)

평가분야	평가배점(%)	평가점수	비고
리더십·전략	10	9.03	• 리더십 지표 • 전략 지표
경영시스템	25	23.42	• 운영 적절성 지표 • 인사·조직 지표 • 재무관리 지표 • 예산관리 지표
경영성과	40	35.99	• 사업지표 • 사업성과 적절성 지표 • 고객만족 지표
사회적가치	15	13.08	• 일자리 확대 지표 • 사회적 책임 지표
정책 준수	10	9.76	• 공공기관 정책 준수 지표 • 지자체 정책 준수 지표
총 점	100	91.28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20년도 출연금 2억원 교부로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 수행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거버넌스 구축

－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A)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관 요구액 (A)	부서 검토액 (B)	증감 (B-A)
총 계		2,233	3,958	200	200	—
기관운영비		해 당	사	항	없	음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자체사업비		2,135	2,195			—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			200	200	0
기본재산적립금		해 당	사	항	없	음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문화재단				전화번호	053-659-4271	
					홈페이지	www.dsart.or.kr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연혁	2011. 05. 17. 등기						
임원 (19.11.1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김문오	달성군수			재임기간	
	대표이사	서정길	現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2018.8.20.~2020.08.19	
	비상임이사	이치우	한국예총대구연합회 부회장			2018.8.23.~2020.8.22	
	비상임이사	김정화	계명문화대학교 부교수(생활음악)			2018.8.23.~2020.8.22	
	비상임이사	서규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운영자문위원회			2018.8.23.~2020.8.22	
	비상임이사	전유진	비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2018.8.23.~2020.8.22	
	비상임이사	표준식	달성군 정책관광국장			재임기간	
	감사	김창현	김창현회계사무소 대표			2018.8.23.~2020.8.22	
	감사	김진천	달성군 문화체육과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운영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본예산)	재무현황 2019.12.31 기준	자산	6,708백만원
	예산액	4,213	4,866	6,244		부채	3백만원
	지자체 지원액	3,190	3,393	3,958		자본	6,705백만원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출연금, 민간위탁금 등)

II. 검토의견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재)달성문화재단의 출연금 변경계획안은 금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2억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과 연구용역 시행을 위하여 (재)달성문화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향유를 위한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재)달성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반영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세출구조 감액·조정하여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임.

4. 예산총괄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총 계		938,000	769,000	169,000
일 반 회 계		929,000	760,000	169,000
특 별 회 계		9,000	9,000	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767	2,767	0
	의료급여기금	663	663	0
	기반시설	118	118	0
	치수사업	5,451	5,451	0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938,000	769,000	169,000	21.98
일 반 회 계	계	929,000	760,000	169,000	22.24
	지방세수입	177,676	177,676	0	0.00
	세외수입	34,525	34,488	37	0.11
	경상적세외수입	24,187	24,161	26	0.11
	임시적세외수입	10,337	10,325	12	0.11
	지방교부세	143,935	143,850	85	0.06
	조정교부금등	26,419	28,999	△2,580	△8.90
	보조금	420,254	304,535	115,718	38.00
	국고보조금등	311,180	202,082	109,098	53.99
	사·도비보조금등	109,073	102,453	6,620	6.4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6,190	70,450	55,740	79.12
특 별 회 계		9,000	9,000	0	0.00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938,000	769,000	169,000	21.98
일반회계	계	929,000	760,000	169,000	22.24
	일반공공행정	113,830	44,081	69,749	158.23
	공공질서및안전	5,152	2,908	2,244	77.20
	교육	11,479	11,433	46	0.40
	문화및관광	36,005	32,609	3,395	10.41
	환경보호	25,095	24,793	302	1.22
	사회복지	331,982	296,262	35,720	12.06
	보건	29,335	28,004	1,331	4.75
	농림해양수산	47,313	44,401	2,912	6.56
	산업·중소기업	19,155	2,754	16,401	595.42
	교통및물류	126,105	89,053	37,052	41.61
	국토및지역개발	66,536	62,854	3,682	5.86
	예비비	1,952	10,588	△8,606	△81.51
	기타	115,055	110,285	4,770	4.32
특별회계		9,000	9,000	0	0.00

■ 성 질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938,000	769,000	169,000	21.98
일 반 회 계	계	929,000	760,000	169,000	22.24
	인건비	89,005	85,611	3,394	3.96
	물건비	46,351	44,033	2,318	5.26
	경상이전	520,638	401,935	118,703	29.53
	자본지출	245,048	196,199	48,849	24.90
	시설비및부대비	222,096	175,589	46,507	26.49
	민간자본이전	10,644	9,974	670	6.72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319	2,589	1,730	66.80
	공사공단자본전출금	966	810	156	19.25
	자산취득비	7,020	7,235	△214	△2.96
	융자및출자	10	10	0	0.00
	내부거래	21,636	21,636	0	0.00
	예비비및기타	6,309	10,573	△4,263	△40.33
	예비비	1,952	10,588	△8,606	△81.51
	반환금기타	4,357	14	4,342	29,215
특 별 회 계		9,000	9,000	0	0.00

4)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0 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 년도 제1회	비고
기획예산실	마을가꾸기 사업	0	120	120	
자치행정과	선불카드 및 상품권 발행 등(예산성립전 사용)	0	64	64	보조
자치행정과	긴급재난지원금(예산성립전 사용)	0	69,823	69,823	보조
자치행정과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250	77	327	
회계과	현풍읍 민원실 청사 내진보강(19년재난특교세)	0	324	324	
종합민원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관련 PC	0	51	51	
정보통신과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0	100	100	
정보통신과	공통기반 재해복구 스토리지 자원 증설	0	17	17	
정보통신과	외부인터넷 백본네트워크 교체	0	94	94	
정보통신과	복지동 대강당 방송설비 교체	0	106	106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점포재개장지원(소상공인생존 자금지원사업)(예산성립전사용)	0	16,654	16,654	보조
일자리경제과	달성 혁신성장 포럼	0	80	80	
청소위생과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0	60	60	
공원녹지과	보식 및 지장수목 이식	50	20	70	
공원녹지과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20	20	40	
공원녹지과	은행나무 열매제거 용역	0	20	20	
공원녹지과	돌발해충 방제사업	40	35	75	
공원녹지과	성서5차 산업단지 잔디관리	0	100	100	
공원녹지과	관광지 화훼 식재	197	119	316	
공원녹지과	—화원 사문진주막촌	59	29	88	

부서명	사업명	2020 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 년도 제1회	비고
공원녹지과	—옥연지 송해공원	99	49	148	
공원녹지과	—강정보	20	20	40	
공원녹지과	—마비정	20	20	40	
공원녹지과	구지 국가산업단지 잔디관리	0	240	240	
공원녹지과	테크노폴리스 녹지 및 조경지 잔디관리	0	100	100	
공원녹지과	가로수 유지관리	0	50	50	
공원녹지과	시설물 긴급 보수	0	50	50	
공원녹지과	현풍,테크노폴리스권 도시공원 잔디관리	0	150	150	
공원녹지과	구지권 도시공원 잔디관리	0	200	200	
공원녹지과	산불진화차 교체	0	51	51	
공원녹지과	휴대용 무전기	0	20	20	
공원녹지과	무선통신장비(중계기) 설치	0	20	20	
복지정책과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	500	100	600	
복지정책과	경로당 생활(건강)기구 지원	200	120	320	
복지정책과	경로당 개보수 지원	300	100	400	
생활보장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0	4,820	4,820	보조
희망지원과	긴급복지 지원	1,716	10,000	11,716	보조
희망지원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산성립전 사용)	0	3,303	3,303	보조
희망지원과	아동양육 한시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0	8,295	8,295	보조
건설과	미지급용지 보상비	500	500	1,000	
건설과	화원 천내리 662-2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0	400	400	

부서명	사업명	2020 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 년도 제1회	비고
건설과	화원 성산1리(광법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0	20	
건설과	화원 성산리(74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건설과	화원 명곡리(명곡램프연결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120	40	160	
건설과	화원 본리리(661-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건설과	화원 성산리(29-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200	2,200	
건설과	화원 구라리(산54-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0	1,000	
건설과	논공 삼리리(승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건설과	논공 노이2리 마을회관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	100	
건설과	논공 금포1리 새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50	150	
건설과	논공 하2리 제실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0	500	
건설과	논공 위천그린공단 중앙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650	750	1,400	
건설과	논공 금포리 대진섬유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	700	1,400	
건설과	다사 세천리(세천마을회관옆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126	250	376	
건설과	다사 서재리 선진섬유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1,100	1,600	
건설과	다사 문산리 장수식당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	100	1,100	
건설과	다사 이천리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00	200	
건설과	다사 서재휴먼시아~진흥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1,500	1,200	2,700	
건설과	다사 세천리(279-6번지선)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	100	
건설과	다사 죽곡2리 강정마을~죽곡2지구 연결도로 개설	0	100	100	
건설과	다사 매곡리~부곡리 우회도로 확포장	0	60	60	
건설과	다사 매곡리(다사성당앞) 도로확장	0	100	100	

부서명	사업명	2020 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 년도 제1회	비고
건설과	다사 달성군립도서관 북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	100	
건설과	다사 매곡리 다사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400	1,400	
건설과	유가 유곡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00	200	
건설과	옥포 간경2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250	350	600	
건설과	옥포 교항1리 교항5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50	350	
건설과	옥포 본리2리 2307-6번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50	250	
건설과	옥포 강림1리 90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20	120	
건설과	옥포 간경리 50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150	250	
건설과	옥포 본리리 913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350	250	600	
건설과	옥포 본리리 99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00	200	
건설과	옥포 본리2리 245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	300	2,300	
건설과	옥포 간경리 73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50	450	800	
건설과	옥포 강림2리 마을회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	300	900	
건설과	옥포 송해공원~기세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	1,500	3,500	
건설과	옥포 강림1리 금봉지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	700	1,000	
건설과	옥포 교항1리 1226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50	350	
건설과	옥포 신당리 135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	100	
건설과	옥포 신당리 1168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	100	
건설과	옥포 신당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00	200	
건설과	옥포 교항1리(교항2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0	700	700	

부서명	사업명	2020 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 년도 제1회	비고
건설과	가창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	0	3,000	3,000	
건설과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	3,000	4,000	
건설과	가창 단산리(277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50	150	
건설과	가창 우록리(본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0	450	450	
건설과	가창 단산리(376-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	50	250	
건설과	가창 오2리(23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0	200	200	
건설과	가창 행정리(511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50	150	
건설과	가창 오1리(마을회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0	600	600	
건설과	가창 단산리(807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50	150	300	
건설과	가창 정대리(60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496	548	1,044	
건설과	가창 중주리(26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950	950	
건설과	하빈 감문2리(마을회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0	600	600	
건설과	하빈 기곡1리(터실)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0	500	
건설과	하빈 현내3리(91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70	70	440	
건설과	하빈 무등1리(마을회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200	700	
건설과	하빈 기곡2리(상당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0	70	70	
건설과	하빈 동곡2리(동곡농협) 2차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	30	
건설과	현풍 원교1리 신동아빌라옆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	70	370	
건설과	현풍 원교리 89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	700	1,700	
건설과	현풍 상1리 현풍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100	600	
건설과	현풍 성하2리(마을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	30	

부서명	사업명	2020 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 년도 제1회	비고
건설과	현풍 원교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건설과	현풍 자모리(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0	45	45	
건설과	현풍 부1리(우성하이츠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0	470	470	
건설과	현풍 원교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20	120	
건설과	현풍 중1리(영재어린이집 옆)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20	320	
건설과	현풍 대1리 955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	10	
건설과	현풍 상1리 마을회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0	40	40	
건설과	현풍 지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30	130	
건설과	구지 수리리 665~567번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	100	
건설과	구지 가천리 마을회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100	200	
건설과	구지 창리 구지중학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50	350	
건설과	구지 창리(66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0	1,000	
건설과	구지 창리(472-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20	120	
건설과	구지 창리 399-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120	220	
건설과	구지 창리 55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80	180	
건설과	도시관리계획 신설 및 변경	0	400	400	
건설과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0	250	250	
건설과	도로굴착복구	500	1,000	1,500	
건설과	논공 금포리(1083) 도로확장	0	50	50	
건설과	논공 본리리 29번지 일원 (남양금속 앞) 도로확장	250	40	290	
건설과	다사 세천리 887번지선 외 2개소 마을안길정비	50	150	200	
건설과	다사 대실초교앞 도로확장	20	300	320	

부서명	사업명	2020 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 년도 제1회	비고
건설과	유가 초곡리 도로확포장	1,126	500	1,626	
건설과	유가 초곡리 마을도로 확포장	964	650	1,614	
건설과	유가 양1리 마을안길정비	100	150	250	
건설과	유가 유곡~도의리 도로 확포장 (구, 유가초등학교)	50	300	350	
건설과	유가 쌍계리 휴양림길 외 1개소 인도 설치	50	200	250	
건설과	유가 도의3리 마을안길 확포장	50	60	110	
건설과	옥포 강림1리 970번지선 도로정비	100	70	170	
건설과	가창 최정산 도로공사	0	4,189	4,189	보조
건설과	가창 냉천리 경마장 앞 인도설치	50	150	200	
건설과	구지 응암리 38번지선 마을안길 정비	0	30	30	
건설과	화원 대구교도소 앞 ~ 화원교 지중화사업	0	1,000	1,000	
건설과	옥포 김흥리 산120번지선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0	300	300	
건설과	논공 금포리917-2번지선(대진섬유열) 도로확장	0	400	400	
건설과	화원 본리리(남평문씨 본리세거지) 인도설치	0	50	50	
안전방재과	클린로드 설치(예산성립전 사용)	0	1,050	1,050	보조
안전방재과	다사 서재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0	900	900	
안전방재과	기세곡천재해예방사업 (특별조정교부금9억5천만원포함)	7,380	4,000	11,380	보조
안전방재과	환경 정비	994	200	1,194	
안전방재과	유가 양리 288-2번지선 현풍천 지류 정비	0	20	20	

부서명	사업명	2020 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 년도 제1회	비고
안전방재과	가창 정대리 471번지선 원계소하천 정비	0	150	150	
안전방재과	구지 화산리 202번지선 창리소하천 정비	0	450	450	
도시과	달성군 도시관리계획(정비) 용역	0	600	600	
도시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0	100	100	
도시과	동곡 칼국수거리 경관개선사업(상사업비)	0	300	300	
도시과	구라리 지하차도 진입로 주변 경관개선사업	0	100	100	
도시정비과	현풍읍 신기리 국가산단북로100길 하수관거 정비	0	210	210	
도시정비과	화원읍 성산리 492-3번지 일원 오수관거 설치	571	160	731	
도시정비과	논공읍 하리 871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	0	380	380	
도시정비과	옥포읍 반송리 916-11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	0	170	170	
도시정비과	하수도 긴급보수	149	50	199	
도시정비과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150	250	400	
도시정비과	저수지 유지관리	100	100	200	
도시정비과	미지급(미불)용지 보상	100	400	500	
도시정비과	논공 노이리(604번지선) 농로확장	0	170	170	
도시정비과	논공 위천리(409-1번지선) 농로 정비	150	200	350	
도시정비과	유가 쌍계리(249-3번지선) 농로 정비	0	60	60	
도시정비과	가창 주리(699번지선) 농로확포장	0	300	300	
도시정비과	가창 옥분리(515번지선) 구거정비	0	100	100	
도시정비과	하빈 동곡2리(406번지선) 농로개설	0	180	180	
도시정비과	옥포 본리리 농로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	0	120	120	

부서명	사업명	2020 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 년도 제1회	비고
도시정비과	하빈 묘리 간이배수장 설치	298	100	398	
도시정비과	논공 노이리(943번지선) 농로확장	0	80	80	
도시정비과	유가 도의리(1081번지선) 용수로정비	0	450	450	
도시정비과	유가 가태리 남통지 그라우팅 보수	0	300	300	
도시정비과	유가 도의리(975-4번지선) 농로개설	0	30	30	
도시정비과	옥포 신당리(236-2번지선) 농로정비	0	100	100	
도시정비과	가창 단산리(694번지선) 농로개설	0	30	30	
도시정비과	구지 목단리(331번지선) 농로개설	0	200	200	
도시정비과	구지 평촌리(803-4번지선) 농로포장	0	100	100	
도시정비과	구지 수리리(474번지선)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0	30	30	
건축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실태조사	0	23	23	
정책사업과	송해선생 기념 전시관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0	300	300	
정책사업과	화원공공복합청사 타당성조사	0	200	200	
정책사업과	케이블카 설비 외자구매	0	1,200	1,200	
정책사업과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	892	260	1,152	
문화체육과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	0	200	200	
문화체육과	비슬산하 책자 제작	0	55	55	보조
문화체육과	천연잔디 관리 장비구입	0	100	100	
문화체육과	읍면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0	44	44	
문화체육과	화원테니스장 야간조명 정비	0	450	450	
문화체육과	달성종합스포츠파크 테니스장 휴게시설 설치	0	30	30	

부서명	사업명	2020 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 년도 제1회	비고
문화체육과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0	400	400	
문화체육과	달성군민체육관 2층 복도 보강	0	22	22	
문화체육과	논공 위천파크골프장 조성(용역비)	0	66	66	
관광과	마비정 벽화마을 주차장 조성(감리비 추가)	0	92	92	
관광과	낙동강 레포츠밸리 수상레저견인선	0	50	50	
교육청소년과	달성군립도서관 운영비	1,209	43	1,252	
농촌지도과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0	54	54	
농촌지도과	청사 내진보강(재난특교세)	0	300	300	
현풍읍	청사 건설자재창고 설치	0	40	40	

5. 주요내용

□ 예산규모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690억원 보다 1,690억원(증 21.98%)이 증가된 9,380억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600억원 보다 1,690억원이 증액된 9,290원이며,
- 특별회계는 90억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먼저,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1억5천8백만원,
-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구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및 코로나 19 긴급대응 방역 소독 등 8억8천5백만원,

- 국·시비 보조금으로 코로나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등을 포함한 1,157억원,
-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5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행사 및 워크숍 등 취소된 경비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등 1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달성군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6억원, 화원공공복합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 2억원, 송해선생 기념전시관 조성 3억원, 케이블카 설비 외자구매 12억원 등 당면 현안사업비 85억원을 편성하였고,
-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699억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166억원,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사업 15억원 긴급복지 지원 100억원 등 115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총43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예비비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86억 6백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종합검토의견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690억원보다 1,690억원 증액된 9,380억원으로,
- 세입부문에서는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과 2019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재원을 대부분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재난 지원, 소상공인 생존자금,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등에 활용하고 군정 주요업무 추진 등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4월 29일

2. 제 출 자 : 도일용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코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교육의 대상,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사업의 범위·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군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3조 :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제5조 : 교육의 대상,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제8조 : 사업의 범위·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인성교육”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2.“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 3.“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의 대상) 인성교육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군 및 그 하부기관, 군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 등의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등의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 및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성 핵심가치·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비 지원에 관한 절차·정산·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5월 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선정 대리인 신청 및 결과통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5.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시행령 제62조의2
- 지방세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제4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없이 이의 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8조 :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선정 대리인 신청 및 결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 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

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제8조 (생략)	<u>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수당과</u> <u>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제11조(현행 제8조와 같음)
----------	--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채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28호부터 제31호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8항, 제32조 단서, 제33조제2항,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0조제1항, 제135조,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8조 및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2. 제13조제1항 후단,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제38조제2항제1호, 제50조제3항 단서, 제71조제5항, 제7장의 제목, 제89조제2항제1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 제9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2조, 제93조제1항·제2항, 제94조제1항·제2항, 제9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제7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 제목, 제14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152조의2

제4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3. 제93조의2의 개정규정: 2020년 3월 2일

제2조~제9조 (생략)

제10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제16조 (생략)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2. (생략)

3. 차량: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4.~ 8. (생략)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 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해당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제1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1., 2017. 7. 26.>

□ 변호사법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세무사법

제17조(징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 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 ⑦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5월 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에 맞추어 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 및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가족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의 경우 세대를 같이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조)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에 관한 상위 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됨에 따라 일부 개정 사항 규정 (안 제6조)

5.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시행령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에 맞추어 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 및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에 관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2조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가족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의 경우 세대를 같이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 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6조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에 관한 상위 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됨에 따라 일부 개정사항 규정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2조제3항을 같은 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라 추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 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 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 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 ----- ----- ----- ---- <u>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 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u>

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생략)

<신 설>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2.-----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

<신 설>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

③ (생략)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생략) 〈신설〉	<u>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u>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현행 제6조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라 추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	--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 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 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 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조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기업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등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 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⑦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
 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⑨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7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
 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	$\times \frac{\text{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text{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⑩ 제7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⑪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
 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 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5.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⑭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7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삭제 <2015. 12. 31.>

2. 삭제 <2015. 12. 31.>

3. 삭제 <2015. 12. 31.>

4. 삭제 <2015. 12. 31.>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5. 12. 31., 2020. 1. 15.>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1. 15.>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5.>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31., 2016. 12. 30., 2020. 1. 15.>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 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부 칙 <대통령령 제30355호, 2020. 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5조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라.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
-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 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2의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 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 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 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 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 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 대상 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 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